

부산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가단3021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4930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가단302178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리

변론 종결 2021. 3. 9.

판결 선고 2021. 4. 27.

주문

1.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58,498,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8,498,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조합은 2012. 12. 20. C에게 5억 2,600만 원을 대출기간 2042. 12. 20., 이자율을 변동형 기준금리 - 1.0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보험가입조건부대출을 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에 관하여 C 및 D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 D조합, 보험가입금액 4,350만 원, 보험기간 2021. 11. 20.까지로 정하여 모기지 신용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D조합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보험금 상당의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C는 2015. 7. 21.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D조합은 2016. 7. 29. 원고에게 '대출금 연체로 인한 임의경매 배당 후 미수채권 170,094,576원 잔존'을 사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6. 9. 13. D조합에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4,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7592호로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9. 12. 'C는 원고에게 44,358,081원 및 그 중 43,5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금액은 2020. 1. 16.을 기준으로 62,556,573원(=44,358,081원 + 43,500,000원 × 0.12 × 565일/365일 + 43,500,000원 × 0.15 × 56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다.

나. C와 피고의 매매계약 등

1) C는 2015. 6. 9. 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2억 500만 원이다.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E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순위번호 9번)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 원금은 1억 6,000만 원이 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3. F 명의로 2015. 9. 5. 매매(거래가액 2억4,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1. 9.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후, 2015. 11. 10. 위 순위번호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선행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사건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H은 2016. 7.경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2016가단60562호로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채권침해행위임을 이유로 4,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였다.피고와 H은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앞둔 2017. 6. 9. 피고가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C의 H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1,000만 원을 대위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기 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H이 지정한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H은 위 합의에 따라 2017. 6. 15.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27, 28,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I 주식회사가 2019. 12.경 C의 재산을 조사하여, 2019. 12. 9. 이 사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2019. 12. 19. C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소명 협조요청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은 2020. 1. 17. 제기된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와 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2015. 6. 8.)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매매계약 체결 이후 채 2개월도 되지 않은 2015. 7. 21.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C의 무자력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가 보유한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재산	가액(원)	인정근거
1	이 사건 부동산	240,000,000	갑 제7호증(F에 대한 2015. 9. 5. 매매금액)
2	울산 울주군 J, K, L 및 그 지상건물	570,000,000	갑 제29호증, 을 제2호증 (M에 대한 2015. 6. 22. 매매금액)
3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O아파트 P호	564,000,000	갑 제30호증, 을 제3호증 (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액)
합계		1,374,000,000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순번	채권자(채무 내용)	금액(원)	인정근거
1	E조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60,000,000	갑 제7호증,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Q조합 (위 울주군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11,000,000	갑 제29호증 (채권최고액)
3	M (위 울주군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	100,000,000	갑 제29호증의 1
4	D조합 (위 고양시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고의 구상금 채권도 포함되어 있음)	549,557,010	갑 제30호증, 을 제3호증
5	R (위 고양시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	갑 제30호증

6	H (2013. 6. 11.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40,000,000	갑 제13호증 (2016. 5. 10. 조정성립)
7	S (2015. 8. 7. 가압류 피보전채권 -울산지방법원 2015카단10434)	239,563,814	갑 제30호증, 을 제3호증
합계		1,820,120,82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39,043,756(울산지방법원 2015카단3568 2015. 12. 9.자 가압류 피보전채권) 및 T에 대한 채무 69,076,114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32715 2016. 2. 16.자 가압류 피보전채권)도 C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에 위 각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 ① 피고는 2010. 1. 25.부터 2015. 6. 4.까지 C에게 합계 381,470,000원을 대여하였고, 일부 변제받은 것을 제하고 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한 잔여대여금 채권은 239,350,000원이었다. C는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2015. 8.경 C가 형사재판 중임을 알게 되어 재판 방청을 갔다가 C가 구속되자, 피해자 H과의 합의 등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F에 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대부분인 합계 8,325만 원을 C의 처(U) 등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는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C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한 것으로서 C의 소극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경부터 2015. 6.경까지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3억 8,100만 원을 송금하고, C로부터 1,41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누나인 피고가 동생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C에 대해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억 4,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8,000만 원)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책임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가사 피고가 C에 대하여 채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의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C를 위해 형사합의금 등을 마련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정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매매계약으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당시 C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면 C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C가 자금력이 유동적이었고 다른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순위번호 9번 근저당권(근저당권자 E조합)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대법원 2001. 10. 15. 선고 2000다66416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020. 1. 16.을 기준으로 62,556,573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8,000만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적어도 위 금액과 같거나 더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둘 중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8,498,55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금 58,498,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H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58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돈은 사해행위 취소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H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였는데, 2017. 6. 9. 피고가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H이 위 소를 취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H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소의 내용과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H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원상회복으로서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적어도 8,000만 원 이상이어서, 58,498,550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위 500만 원의 지급과 중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